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미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I.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되어서야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한미군 기지에서 무슨 내용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의 내용은 애초에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처음부터 ‘배송사고’라는 말로 사건의 심각함을 무마하려고 해왔다. 그러나 탄저균이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생물무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허가나 통제 없이 이를 국내 반입·실험하려 했다는 사실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 내 50개 주 연구소는 물론 주한미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 있는 군사기지 및 연구소 194개소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왔다¹⁾. 그 중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더그웨이 연구소가 민간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보낸 것으로 4월 29일 한국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 샘플 1ml가 배송되었다고 알려졌다²⁾.

1)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관련 실험실 검토 페이지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2015년 12월 21일 검색)

2)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 (U.S. Air Force Osan Air Base)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탄저균을 배송 받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민간 연구소에서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5월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바로 신고했고, CDC는 이 사실을 미 국방부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5일이 지난 5월 27일에서야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는 사실을 주한미군에 통보했다. 그 사이 평택 오산공군기지 실험실에서는 5월 20일 첫 실험에 이어 한창 탄저균 샘플 폐기 요청이 오갔던 26일에도 실험을 감행했다. 5월 29일 주한미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This was the first time the training has been conducted)”이라고 밝혔다³⁾.

치명적인 생물무기이자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이 국내 반입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미 당국은 무수한 의혹들을 해소하기는커녕 운영 결과 보고서 하나로 그동안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특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사결과와 처분만을 기다린 것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다음에서는 한미합동실무단의 운영 결과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경과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샘플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 실시
- (04.24) 미국 국방부 유타주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에서 총18개 탄저균 샘플을 발송
- (04.29) 페덱스, 탄저균 샘플 1개 주한미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배송
- (05.21)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냉동보관중이던 샘플을 개봉,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함. 주한미군 관련 요원 22명이 실험에 참가
- (05.22) 메릴랜드의 한 민간 연구소가 탄저균 샘플이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이 사실을 CDC에 신고함
- (05.27) 미국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에 ‘검체에 탄저균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폐기하라’고 지시, 오산공군기지 미51비행단 긴급대응팀은 미CDC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샘플 폐기
- (05.27, 20:00) 주한미대사관에서 한국 외교부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통보
- (05.27, 20:38) 한국 보건복지부, 주한미군으로부터 유선 및 메일로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및 사후 조치에 대한 통보를 받음⁴⁾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184> (2015년 12월 21일 검색)

3)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 (U.S. Air Force Osan Air Base)

<http://www.osan.af.mil/news/story.asp?id=123449327> (2015년 12월 21일 검색)

4) 시민사회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 (05.27, 20:40) 한국 국방부, 주한 미7공군사령관으로부터 탄저균 반입 사고에 대해
통보받음.
- (05.27, 21:00) 한국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21시 경, 주한미군 공보과로부터 전화를
받음.
- (05.28) 한국 질병관리본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현장 조사단 파견,
생물테러대응과장 3명 현장조사 실시(17:50~19:00)
- (05.29) 한국 국방부, 국회 국방위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보고’
- (06.01) 주한미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배송 및 통관 문서와 탄저균 멸균처리 각서
사본 제공
- (06.02 ~ 05) 국방부 – 주한미군사 대책회의, 합동조사단 구성·운영 협의
- (06.04)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과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고 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
- (06.05) 주한미군, JUPITR 탐지 체계·분석식별 체계·조기경보 체계 장비에 대한 소개
및 시연회 실시. 이날 시연회에는 한국 국방부 및 국직기관,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가하였음.
- (06.05) 한국 국방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부처, 범정부차원의 실무단 구성 필요성
공감
- (06.10) SOFA 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관련
한국 정부 유관부처(국방부,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산업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합동 회의를 개최함.
- (06.12) 미국 국방부, 2005년에 일본 자마지역 주일미군 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보낸 적 있으며 2009에서야 폐기했음을 밝힘⁵⁾.
- (06.14) 한국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대표단, 공군 작전사령관 평택 오산공군기지
생물검사실 방문하여 사고경위와 대응책 보고 받음.
- (06.18) 미국 CDC, 6월 5일에 3장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짐. 2005년에서
2015년까지 19개주 5개국 연구소에 문제 있는 탄저균 배달가능성 제기.
더그웨이(DPG) 연구소에 규정위반으로 운송금지명령을 요청⁶⁾.
- (06.18) 한미 SOFA 질병예방 및 통제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06.23) 한미 연합사 장차작전 참모부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대응과장과 실무장교,

메일 내용은 탄저실험, 비활성 여부 확인없이 즉시 폐기, 만일을 대비한 노출 의심자 예방접종 실시 및 즉각적
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중의 노출 가능성은 없으며, 일반 대중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통보함

※ 통보 내용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활성의 무해한 샘플로 여겨지는(The sample which
was expected to be inert and harmless”이라고 기재됨

5) 주일미군기지 캠프 자마에 2005년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는 미 국방부 보도자료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Pentagon_Issues_Statement_On_DoD_Laboratory_Review_Update.pdf (2015년 6월 28일 검색)

6) USA TODAY 기사, Army lab lacked effective anthrax-killing procedures for 10 years' (2015년 6월 18일)
<http://www.usatoday.com/story/news/2015/06/17/anthrax-shipments-bruce-ivins-emails/28883603/> (2015년
6월 28일 검색)

- 합참 화생방과 인권, 평택 오산공군기지 생물식별능력세트 훈련 시설 방문 및 시연 관람
- (06.26) 한국군 화생방방호사령관 등 한측 인원들이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생물식별능력세트 훈련 시설 방문하고 시연 관람
 - (07.07) 미 국방부 합동화생방어사업단 관계자 한국 방문하여 미 본토에서 진행중인 미 연구소 대상의 중간 검토보고서를 한국측 유관기관과 공유
 - (07.11) 한미 SOFA합동위원장, 한미 생물방어 협력 관련 합동실무단(JWG) 설치 각서 서명
 - (07.14) 한국측 사전 대책회의 진행. 한측 실무단 구성과 현장 방문계획 논의
 - (07.24) 미 국방부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7월13일자)』를 언론 공개전 한국 국방부에 제공, 한국 국방부 기자설명회 개최
 - (07.29) 한미합동실무단, 활동계획서 합의 및 현장 기술평가 제안서 검토
 - (08.06) 한미합동실무단, 평택 오산공군기지 방문하여 현장 기술평가 실시
 - (11.10) 미국 국방부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 조사 정보 페이지(Laboratory Review), 미국 내 50개주와 워싱턴D.C., 3개령(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해외 9개 국가를 포함해 전체 194개 연구소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보내졌을 것으로 확인됨.⁷⁾
 - (8월부터 12월까지) 생물학 작용제와 관련물질의 배송, 반입, 수송, 취급, 관리, 안전, 폐기 등 관련 법률과 규정, 양자 합의문서, 국제표준 및 절차, 정책 등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
 - (12.17)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Final Report) 발표

II.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의 문제점

지난 12월 17일 발표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의 핵심은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고, △탄저균 반입실험의 피해는 없었으며, △배송, 취급 등의 절차는 지켰으므로,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1. 탄저균 반입·실험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 간과

한미합동실무단은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고 있다. 배송과 저장, 취급, 폐기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생물작용제를 반입한 것 자체는 엄연한 불법이다.

합동실무단은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동 샘플은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였는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국내 법률전문가들은 감염병예방법은 물론 생화학무기금지법 모두 고위험 병원체의 비활성화 여부를 구분해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판단의 결과만 제시하고 있을 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사균은 고위험병원균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여부는 조사 보고서에 일체의 언급도 없는데,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은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 탄저균 자체가 생물무기에 해당하는 생물작용제이므로 당연히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합동실무단은 ‘현행 SOFA 상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통보하는 절차가 없다’며 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는 제7조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 내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 평가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SOFA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같은 차원에서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2. 미국의 정보접근 차단 및 비협조적 태도

한미합동실무단의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조사 자료의 공개여부가 미국에 의지에

달려 있고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애초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현 바이러스트팀장(이학박사)은 조사가 애초의 계획(9월 중 발표)과 달리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 "(조사결과가) 미군 측으로 넘어가야 되고 미군 측에서는 본토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결국 보고서는 사건 발생 약 7개월만에서야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이렇게 보고서 발표가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군당국이 일부러 조사결과를 은폐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도 했다. 탄저균 불법 반입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미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생색내기용 셀프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게다가 당시 박포현 팀장은 ‘실험실의 설치 목적 및 지금까지 시행된 실험종류 및 횟수’ 등을 자료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당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실무단으로 참여했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요청했는데 정보공개 여부를 떠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용산기지로의 탄저균 반입 횟수 ‘15차례’는 공개되었으나 시행된 실험 종류나 샘플의 양, 실험의 횟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사용된 탄저균 실험 관련 의료용 폐기물은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뭉뚱그려 ‘어떠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건강상의 영향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기만 하다.

3. 미 국방부 검토위원회 조사보고서의 오류

한미합동실무단 한국측 단장은 결과 보고서 발표시 낭독한 공동발표문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 몰래 미국으로부터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과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것이 “정상적인 국가방위 활동”이며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도 군사적 목적의 생물무기 활용을 원천 금하고 있지, 비활성화된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과 훈련이 정상적인 국가방위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내 국방연구

소들의 사균화 처리 과정이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 제작 및 배송 관련 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7월13일자)』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는 탄저균 사균 처리 즉 감마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고 살아남는 탄저균이 발생했고, 이것이 대량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특히 현대 과학 기술계에 탄저균을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바로 이 기술의 부족이야말로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봤다.

반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더그웨이 연구소를 비롯해 다른 생물무기 샘플 제조 연구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비활성화 절차 및 규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부족을 규정을 통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더그웨이 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연구소들은 이번 난리통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의 기준만 다른 모범적인 연구소와 동일하게 바꾸면 되는 데 왜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연구소까지 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것인가? 오류 투성이다.

이러한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오류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결과 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미 국방부의 검토위원회 보고서가 “모든 실험실이 방사능 처리 및 생존성 시험 시 공통예규를 따르도록 하며, 탄저균 포자의 사균화 처리 및 생존성 시험에 적용할 품질보증 및 품질통제 절차를 정립할 것을 미 국방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권고사항이 시행될 때까지 미국 국방부는 모든 생물학 작용제 샘플의 배송을 중단하였다.”고 한 점을 밝히면서도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인원의 장비시험 및 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현대 과학기술로는 완벽히 탄저균을 영구 비활성화할 기술은 개발되지 않더라도 연구소들의 비활성화 기준만 통일되면 ‘통보·평가’만으로 또 다시 언제라도 탄저균 샘플을 국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은 상태(살아있는 탄저균의 존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비활성화(사균화) 탄저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한미 양국이 ‘당분간’ 탄저균 샘플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균화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만 마련된다면 탄저균 반입에 대한 ‘통보·평가’만으로 또 다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4. 주한미군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지난 5월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며 탄저균 외에 다른 병원균 반입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거짓말이었다. 한미합동실무단 조사에 의하면 탄저균 외에도 페스트균 역시 평택 오산기지에 반입되었다. 이번 운영 결과보고서에서 탄저균과 페스트 2종 외에 반입된 것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제 3의, 4의 또 다른 고위험병원체 반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년 5월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의 발표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2,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평택 오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사로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인구 천만의 서울 중심부에서 2009년부터 탄저균 반입·실험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의 설명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검사용 탄저균 사균 샘플을 용산기지에 무단 반입하여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했다. 탄저균을 “안전하게 제독·폐기”했다고는 하지만, 2005년 이래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전 세계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의 시점에서, 용산에 배송됐던 탄저균 샘플 역시 활성화된 균이 아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용산기지에까지 탄저균이 반입된 바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한미군이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을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말’, ‘말바꾸기’라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국방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에 처음 반입된 것’이라고 하려던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일 수 있다. 지난 7월 29일 녹색연합,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용산 주민들이 서울시와 가진 간담회에 출석한 서울시 감염병관리팀장은 국방부에 확인한 바를 근거로 용산에는 관련 시설과 샘플 일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보도자료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대표해 사건 초기부터 주한미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설명과 해명을 듣고 실제 현장 방문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국방부도 ‘오산기지가 처음이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

5. 한국측 실무단 활동의 적절성 문제

한미합동실무단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실무단 및 자문단 구성원 명단도, 선정 근거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결과 보고서 어디에도 참여한 명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실무단을 구성했다.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인원 중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참여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애초 한미합동실무단이 활동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적 고려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국방부 주도의 한미합동실무단 구성에 반대하고, 특히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참여한 구성원의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국방부 및 한국측 합동실무단의 활동 내용을 볼 때도 과연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합동실무단의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7월 11일 합동실무단 발족 이후 사실상 현장 방문 및 조사는 8월 6일 있었던 현장기술평가가 유일한 주요 활동이며,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의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 것에 그친다. 해당 결과 보고서에 유관부처들의 실무단 구성원, 특히 민간 자문단은 내용상 얼마나 기여했으며 최종본에는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합동실무단 발족 이전에 6월 23일과 26일 연합사를 비롯 한국측 국방관계자들은 문제가 되었던 평택 오산공군기지의 “생물식별능력세트(BICS) 훈련 시설에 방문하여 시연을 관람”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대정부질문 답변에 언급되었던 6월 5일 주피터 프로그램 시연회까지 포함하면 시연회는 총 3차례 진행되었다. 탄저균 반입과 실험 모두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던 상황임에도 군사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시연을 재차 실시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주피터 프로그램의 생물식별능력세트 훈련 시설을 방문하고 직접 시연을 관람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6. 한미합동실무단이 제안한 합의권고안의 문제점

한미합동실무단은 재발방지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만들었고 지난 17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서명으로 발효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한미군이 샘플 반입 시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용도·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통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여전하다.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에 공동평가를 실시하거나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합동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안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에 따라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공개할지, 운영 개선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규제 방법 역시 명시되어있지 않아 아무런 규범력이 없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지난 11월 19일 평택 캠프 험프리 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군 당국은 평택시나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11월 27일 기지 밖으로 유출된 기름이 흘러 나와 수로를 타고 농지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2002년 한미 양국은 기지 내부의 환경사고라도 외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합의하였지만, 미군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군측의 규정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으며, 18일 열린 SOFA 합동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조차 않았다. 결국 이번 권고안은 불법 행위를 한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함에도 한미 당국은 ‘전례 없는 조치’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SOFA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를 포함한 위험 물질을 취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7. 한미 생물방어 협력 강화는 무책임

한편, 한미 간의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도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미당국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대비를 이유로 공세적인 생화학전 전략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연습을 강조했으나 이는 바람직한 대응책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의 안전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방어’ 명분의 협력 자체에 대한 우려다. 생물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방어 훈련에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는 언제든 공격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을 빌미로 자국도 방어적 목적의 생물

무기 대응 프로그램에 착수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부의 연구소로부터 이 모든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유명 과학잡지 네이처(Nature)지는 ‘테러’에 대한 공포로 온갖 규제와 검역을 가동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탄저균을 생물무기로 활용한 생물테러(bioterror) 사건이 발생한 것은 모두 미 국방부 연구실로부터 기인한 사건들”이었다며 국방부 역시 민간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물학 작용제를 ‘방위’ 목적의 실험용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관리 여하에 따라 이는 어느새 확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생물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모두 이 조약에 가입했다. 진정 한반도상에 생물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생물무기 자체를 불법화한 협약의 원칙을 준수하여 생물무기의 보유 및 이전 등을 금지하고 생화학전 전략과 작전, 이에 따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책이다. 물론 검증 체제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거부로 검증 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이후 검증 체제 구축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정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모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매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8. 제한적 범주의 조사로 인한 미해결 의혹

이 외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에서 해결하지 못한 의혹과 문제점은 아직 많다.

평택 오산기지에서 실제 예정되어 있었던 실험은 무엇이었는가?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4개의 축 중 하나인 생물식별능력세트(BICS)을 시연하기 위해 탄저균 샘플을 들여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피터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인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Peter Emanuel)의 인터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준다⁸⁾.

인터뷰를 요약하자면 첫째, 이미 18개월동안 BICS를 위한 장비 실험이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둘째 2014년 말까지 오산기지에서는 세균공격 없이 자연상태로 환경탐지 평가(AED) 탐지기 실험(표준실험)을 했고, 2015년 초 더그웨이의 연구용 터널(ABT)

8) CBRNePortal, The JUPITR ATD Program - Interview with Dr. Peter Emanuel (2014년 12월 16일) <http://www.cbrneportal.com/interview-with-dr-peter-emanuel-the-joint-united-states-forces-korea-portal-and-integrated-threat-recognition/> (2015년 12월 21일 검색)

에서는 남한의 배치대로 탐지기 및 경보장치들을 배열하여 양성세균 살포 실험을 했으며, 이를 한국으로 옮겨와 남한에서 환경탐지평가 탐지기의 작동시연(operation demonstration)을 한다는 것이다. 탄저균을 한국내 반입한 것이 4월 말이므로 시기적으로 인터뷰에 나온 작동시연을 위해 탄저균을 반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5월 22일 신고로 인해 탄저균 실험이 전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제 야외에서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미 국방부는 어째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송됐다는 것을 알고도 주한미군에 샘플 폐기를 즉시 알리지 않았는가? 왜 5월 26일 2차 실험이 있었는가? 미 국방부의 검토위원회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지시각 5월 22일 처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으며, 23일부터 미 질병관리센터는 국방부 및 국가 공공의료연구소들과 매일 전화통화를 시작했다. 또한 25일에도 국방부가 전체 국방부 연구소들에 대해 비활성화된 작용제의 발송에 대해 전면 중단조치를 취했다. 미국과의 시간차를 감안하더라도 이미 빠르면 23일(한국 시간 24일)에 이미 탄저균 샘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어째서 평택 오산기지에서 5월 26일 아무런 제지 없이 2차 실험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실을 알고도 즉각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SOFA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탄저균 실험이 이뤄진 용산기지 내 ‘병원 간이시설’의 정체와 안전성 여부도 보다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생물안전등급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만일 천만 인구의 수도 서울에 제대로 된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활용한 위험천만한 실험을 감행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 육군 홈페이지 내 칼럼을 살펴보면,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여름에서야 용산기지 내 106번 식품안전연구소를 생물안전등급(BSL)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⁹⁾. 비활성화된 탄저균은 BSL 2등급에서 실험할 수 있다. ‘병원 간이시설’이 현재 폐쇄된 시설이란 점 외에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것이 106번 식품안전연구소를 개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곳에서 실험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 2009년부터 연구소 개조가 된 2013년까지 해당 연구소의 안전등급은 사균처리된 탄저균을 실험하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까지 탄저균과 함께 주피터 프로그램 독소 분석 실험 1단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페스트 반입사실이 뒤늦게서

9) http://www.army.mil/article/121633/JUPITER_program_takes_shape_on_Korean_Peninsula/

야 밝혀졌는데, 과연 보툴리눔은 포함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실험실을 세척한 물이 과연 서해로 흘러갔는지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아직 많이 있다. 위에서 제기한 의혹들 외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법률 및 규정 검토의 내용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의혹 해소와 자료 공개는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 적어도 '구글링'으로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넘어선 자세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한미군에게 생물무기 폐기와 관련 프로그램 중단을 즉시 촉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과 추가적 조사를 하지 않고는 한미 양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문제점

하주희 변호사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1. 한미SOFA(S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에 위험물질 반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 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발표처럼 실제로 한미 SOFA에는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한 조문이 없음
-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마음대로 반입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님.
-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462 결정 : SOFA 제4조가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SOFA 4 조가 환경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협정 전체를 살펴 보더라도 합중국 군대가 공여받은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함에 있어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 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
- 2012. 12. 20. 선고2011누37376 판결 : “SOFA에 대한민국의 환경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도 본 협정 및 부속합의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환경 관련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

▶ SOFA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아무 물질이나 들여와서 실험 훈련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함.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등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반입시 허가(혹은 통보라도)를 받고, 이를 인수하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 두 기관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답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된 경우를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동 샘플은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제2조(정의)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1) 우선 법상으로 ‘비활성화(사균)’은 괜찮다는 규정은 없음.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작 배포한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및 안전 관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매뉴얼에 의하면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및 안전관리

질 병 관 리 본 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

이희일
02-380-2971
isak@nih.go.kr



고위험병원체 신고 및 보고

- 분리신고 대상:
 -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유전자재조합 방법으로 새로운 성질의 고위험병원체를 제조한 경우

<약독화된 A/H5N1>
<무독성탄저균>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탄저균 관련 자료에는 “동물 백신주로 사용되는 Sterne strain의 경우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나, 의약

품으로 제품화된 탄저 동물백신 및 생백신은 국가 안전관리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재.

- 질병관리본부 소파 개정안 제출 : 질병은 소파 ‘보건과 위생’ 조항의 양해사항에 “미군은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서 지정한 고위험병원체(사균 포함)와 ‘유전자변형 생물체법’의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에 반입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보건당국에 이를 사전 통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⁰⁾

2) 그렇다면 유출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

- 미국 검토위원회의 ‘과학적, 기술적’ 조사 결과 : 2015. 7. 24. 미 국방부가 탄저균 배달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사결과의 핵심 - “위원회의 조사 결과의 핵심은 포자의 비활성화와 탄저균의 생존력 실험을 위해 철저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개발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과학적 공동체의 기술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학계에는 탄저균 비활성화와 이를 확인하는 시험을 위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행을 개발할 기술적 정보가 불충분함. 감마선을 통해서 탄저균을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살아있는 탄저균이 왜 관련 시험을 통해 점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원인을 한가지로 꼽을 수 없음. 탄저균은 특히 '죽이기' 어려우며 방사선 처리된 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손상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음.” => 비활성화 혹은 사균화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기술적 한계라는 것

- 특히 그 양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음

- 규범의 체계적 해석에 반함. 최초 질병관리본부는 미군오산기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비활성화된 것으로 인식된 샘플을 BSL-2급 실험실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5. 21. BSL-2급 시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를 이용하여 최초 해동하여 PCR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 27. 미 국방부로부터 폐기통보를 받아서 폐기하였다”고 발표. 즉 만약에 전혀 신고, 허가 등이

10) 2015. 7. 7.자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99268.html>

필요 없는 것이면 굳이 BSL(Bio Safety Level) 2급 냉동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고, 이는 미국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분명하다는 것. 당연히 우리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실험실 자체가 신고 혹은 허가의 대상입니다.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BL3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과 독소를 이용할 경우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용산에서의 실험의 경우 “간이 BSL-3 실험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다”고 답변 했다고 전해짐.

=>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소개하는 탄저균 감염사례는 모두 미국 사례이며 “2002년 미국 텍사스의 한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원이 탄저균 취급 연구원을 돕기 위해 맨손으로 보존 용기를 냉동고에 넣은 후 손을 세척하였으나 피부탄저에 감염됨”이라고 기재.

3. “주한미군과 한국정부 인원의 장비시험 및 훈련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생물학 작용제 검사용 샘플이 한국으로 반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주한미군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대응 네트워크(LRN)에 등록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을 지원하기 위한 샘플 반입도 포함된다”

1)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한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 “부시행정부, 후세인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강조하며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던 2002. 10. 미 CIA는 ‘2002년 10월 현재 이라크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라크가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에 관한 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는 다량의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들을 지니고 있었으나, 유엔무기사찰단의 활동으로 4만개의 화학무기탄과 5만 리터의 화학무기, 180만 리터의 화학물질을 폐기했다. 그럼에도 이라크는 상당량의 사린가스와 겨자탄을 숨겨두고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¹¹⁾

-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ormally charging the Soviet Union with Violation of the BWC : Sverdlovsk 사고와 관련하여, BWC 위반은 다음의 요소가 존재한다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1) 소련이 탄저균 생물체나 포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2) 예방적, 방어적 혹은 다른 평화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그러한 목적을 정당화 시키는 것 이상의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2파운드(10kg)의 건조 탄저균 포자들이 이 실험실로부터 발생)

11) 신동아, 이라크 전쟁의 풀리지 않는 의문, 대량살상무기의 진실, 증거도 시체도 오리무중... 정보 독점한 부시와 네오콘의 음모?/ 2003. 8. 22.

UNCLASSIFIED

SECRET

RELEASED |

file
Gen. Prot.
of 1925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ormally
Charging the Soviet Union with Violation
of the BWC
(as well as the Geneva Protocol of 1925
and Related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UMMARY: With respect to the Sverdlovsk incident, a violation of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would be demonstrated if the following elements were established: (1) that the Soviets were in possession of anthrax organisms or spores; and (2) that the quantities involved were not possessed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or were possessed in quantities exceeding that which would be justifiable for such purposes. Interagency review of the intelligence has concluded that there clearly is a basis for concern that activities not permitted by the Convention may have been conducted at Sverdlovsk. With respect to the possible use of toxin weapons in Afghanistan and Southeast Asia, a violation of the BWC by the Soviet Union would be demonstrated if any of the following elements were established: (1) that Soviet forces used or possessed toxin weapons in Afghanistan; (2) that the Soviets supplied toxin weapons, or quantities of toxins for weapon purposes, to any of the forces in Afghanistan or Southeast Asia; or

- “지난 10년 이상 동안, 미국 국내 및 해외의 86개 시설이 완전히 비활성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채, DPG로부터 약간의 생탄저균 포자를 배송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 2015. 7. 13.)

=> 미국의 이중성